



# 방송작가가 알아야 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최승수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재분류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위원,  
콘텐츠진흥원 글로벌콘텐츠센터 자문위원, 개인정보인증(PIPL) 심사원, 한국게임법학회 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위원,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前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방송작가가 대본을 창작한 경우 작가는 해당 대본(어문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등 영상물은 위 대본 저작물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M Thai (<http://music.mthai.com/news/>) <커피 프린스> 태국판

### 원작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로 취급되므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그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다. 즉, 대본 저작권은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의 저작권은 드라마 제작사가 보유한다.

그런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이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귀속한다고 하여도, 원저작자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래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려고 하는 자는 원저작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양도받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려고 할 경우 해당 영상물은 만화의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영화나 드라마 제작자는 만화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화나 대본은 영화각본이나 드라마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므로 영화제작자나 드라마 제작자는 시나리오 작가나 방송대본 작가로부터 해당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시나리오 작가나 방송대본 작가로부터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이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어떤 방송 대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를 바탕으로 속편이나 리메이크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들 때에는 그 속편 드라마나 뮤지컬은 원 드라마의 2차적 저작물이 될 뿐만 아니라, 원 드라마의 대본과의 관계에서도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속편 드라마나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 드라마 제작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원 드라마의 대본작가의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 시나리오나 원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기초로 하여 리메이크나 속편 드라마 또는 뮤지컬, 소설 등을 만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 영상물의 각본이나

원 시나리오나 원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를 기초로 하여 리메이크나 속편 드라마 또는 뮤지컬, 소설 등을 만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 영상물의 각본이나 대본 작가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해당 작가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된다. 때문에, 작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문구를 함부로 넣지 않아야 한다. 설령 그렇다 해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작가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대본 작가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만, 해당 작가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한 경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작가가 제작자와 작가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대본저작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여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작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문구를 함부로 넣게 되면, 리메이크나 속편 등 해당 영상물의 2차적 활용 시에 작가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계약서 문구에 단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작가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모두 양도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에 관한 한 포기할 상황은 아닌 것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 제작사의 전속직원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드라마 대본을 창작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방송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의 경우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 리메이크, 속편 등을 제작할 경우

셋째로, 저작권법상 영상제작물 특례 규정을 들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드라마작가)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드라마 제작사)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영상저작물

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영상저작물의 변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작가는 제작사에게 해당 드라마 자체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해주는 것이지, 이에 더 나아가 속편이나 리메이크 제작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드라마작가가 드라마 제작사와의 작가계약 등 합의 내용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특약이 없어 위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 제작사는 속편이나 리메이크를 만들려면 원대본 작가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집필계약을 체결할 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하여 작가가 제작사측에 대하여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언제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도 제작사가 속편을 제작할 권리는 보유하되 다만 속편이나 리메이크 대본 창작에 참여할 권리를 원대본 작가에게 부여해달라는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비록 제작사에게 속편 제작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 속편의 대본 작성에 해당 작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식으로 타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원대본이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의 리메이크, 속편 등을 제작할 때 원시나리오 작가에게 얼마의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가는 제작사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이는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작가단체와 제작자 단체 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

지금까지는 방송작가나 시나리오 작가의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물의 2차적 이용에 관련된 쟁점을 다루었지만, 방송대본이나 시나리오가 다른 원작을 바탕으로 창작된 경우에는 입장이 정반대가 된다.

소설이나 만화 등 다른 저작물을 바탕으로 방송 대본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방송대본이 소설이나 만화 등의 2차적 저작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도 원작의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작성권에 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한편, 원작이 아니라 실존인물 또는 실화를 바탕으로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창작할 경우에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의 라이프스토리는 저작물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실존 인물이나 그 주변 인물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스토리를 영상물로 만들 경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저작권이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된 실존 인물과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그 실화와 관련된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